



㈜리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 번길 10, 우) 22013

판매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일반 거래 조건

- 2018 년 5 월 버전 -

1. 인수인계

“인수인계”란 아래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물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거나 매도인이 완료한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1) 물품의 인수인계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후에 이루어진다. 서비스가 별도로 이행되거나 계약된 경우, 그 물품이 인도된 때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2) 용역의 완료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한 날로부터 2 주 간 내에 그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수인계 받아야 한다. 매수인이 위 기간 내에 물품의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기 기간의 만료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별도로 합의된 시험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일정의 완료 후 해당 물품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때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물품의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인수인계가 저해되지 않으며, 매수인은 물품에 대한 검사 지체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수정, 해제 요청 (이하 “주문 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도인의 재량으로, 매수인에게 주문 변경에 따라 변경될 물품 대금을 통지하여 줄 수 있고, 매수인이 변경된 물품 대금을 수용하면, 주문 변경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 만일 매수인이, 물품이 인도된 이후에, 물품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회 (또는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해당 물품을 다른 고객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수 가능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 회수에 동의하더라도, 매수인은 해당 물품 대금의 30%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가령, 항공 운송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의 반품 등 매도인으로서의 물품 회수가 가능한 경우로는, 매도인의 표준 카탈로그상의 물품으로서 인도 당시의 포장 상태가 훼손되지 않았고, 인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국한된다. 매수인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 제작된 물품의 경우 (주문 당시 매도인의 카탈로그에 있지 않은 경우 등)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든, 매도인은 매수인의 회수 (또는 반품)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2. 위험부담의 이전

물품에 관한 손실 또는 손해의 위험부담은 계약서, 매수인의 발주서 또는 매도인의 매도확약서(“계약서”, 본 물품/서비스 공급에 관한 일반 거래조건과 함께 “계약”이라고 칭함)상의 인도조건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만일 물품의 송달, 선적, 조립 및 설치의 개시 또는 수행, 물품 인수인계의 수락, 영수 또는 시운행이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락, 영수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물품에 관한 손실 또는 손해의 위험부담은 그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소유권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총 계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회수 절차에 이의 없이 협력한다.

전문(前文)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물품 주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4. 이행지체

(1) 매도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기 또는 작업일정표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2) 본 일반거래조건 제 1 조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인수인계가 합의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물품에 관한 작업일정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본 일반거래조건 제 1 조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경우 서비스에 관한 작업일정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매도인의 작업일정 준수는, 매수인이 요구되는 허가 또는 승인 (필요한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여 제공하는 것과 선수금 지급 (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과 같은 매수인의 의무를 시기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즉 만약 전문의 선결조건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일정은 이에 따라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이행기는 이에 상응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5) 본 일반거래조건 제 9 조에 명시된 불가항력 또는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이행기는 이에 상응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6) 매도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서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경제적 손실을 명백히 입은 경우, 매수인은 일주일 당 인도가 지연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해당 부분의 품목가격의 0.5%를 지연손해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연손해금의 총액은 인도가



(주)리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 번길 10, 우) 22013

지연되어 원래 목적으로 사용에 제공할 수 없었던 해당 물품 부분의 품목 가격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은 본항에 규정된 것에 제한된다.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 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1 개월 이상 물품의 발송 및 선적이 지연된다면, 매수인은 위 발송준비의 통지 후 매월 지연된 해당 물품의 품목가격의 0.5%를 보관비용으로서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물품의 발송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5 개월 이상 지연된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지속되는 당해 지연행위를 계약위반으로서 간주하거나 상기의 비율에 따른 보관비용을 매수인에게 계속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만일 조립, 설치 또는 시운전 업무가 매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품목으로부터 발생하는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과 매도인이나 설치자의 추가적인 출장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 지체

매수인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월 대금의 1%를 지연이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6. 보증

매도인은 계약서에 따라 인도하는 물품이 신품이며 서비스가 전문적임을 보증한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보증된 사항을 제외하고, 매도인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상업성이나 목적 적합성 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물품 및 서비스의 보증기간은 인수인계 시점으로부터 12 개월로 한다. 다만 당해 보증기간은 계약서상의 인도조건에 따라 물품 인도 후 최장 18 개월을 넘지 못한다. 상기 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견되어 매도인에게 서면 통지된 경우,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의 시간 내에 이를 보수 또는 대체품으로 대체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재차 제공하여 하자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보수에 협력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관리하는 인력 또는 시설물을 하자 보수업무에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제공된 물품이 원래 합의된 품질과 경미한 편차가 있거나 유용성에 사소한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물품에 대한 하자가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 이전 후의 매수인 귀책사유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용, 과도한 사용, 부적합한 설치, 부적절한 운전자, 부적절한 토지기반상의 설치, 본 계약상 상정하지 않은 특별한 외부적 요인 또는 재생활 수 없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그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제 3 자의 부적절한 수정 또는 보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에 명시된 구제수단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보증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들이다.

7. 산업재산권

(1)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국가내의 제 3 자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이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제 3 자가, 매도인이 제조하고 본 계약에 따라 사용한 물품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산업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일반거래조건 제 6 조(보증)에 명시된 보증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a)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서, 문제된 물품의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할 것인지 또는 더 이상 당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물품을 변경하든지 또는 그것들을 교환할 것인지를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매도인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본 일반거래조건 제 8 조(손해배상)를 따른다.

(b) 매도인의 상기 의무는 매수인이, (i) 제 3 자로부터 그러한 주장을 받은 즉시 서면 통지한 경우, (ii) 그러한 침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iii) 보호조치 및 매도인의 재량으로 협상을 하도록 남겨둔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일 매수인이 손해를 줄이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 때문에 물품의 사용을 중지한다면, 해당 물품의 사용중단행위는 제 3 자가 주장하는 침해를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지 말아야 함을 제 3 자에게 지적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 자신이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본조에 따른 권리를 상실한다.

(3)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매수인이 제공한 사양서, 매도인이 예견할 수 없는 사용방법, 매수인에 의한 물품 변경, 또는 매도인이 제공하지 않은 제품과의 혼용 때문에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본조에 따른 권리를 상실한다.

(4) 권리에 대한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본 일반거래조건 제 6 조(보증)가 적용된다.

(5)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매수인의 다른 청구 또는 권리하자에 대하여 본 일반거래조건 제 7 조에 명시된 권리를 초과하는 다른 권리는 배제하기로 한다.

8. 손해배상

(1) 사망 또는 상해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관계 법률을 따른다.

(2) 매도인, 매도인의 종업원 또는 본 계약에 관여한 하도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계약위반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재산 및 자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진다.

(3) 본 일반거래조건 제 8 조 1 항 및 2 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건당 총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본 계약 건에 관한 총 배상액은 총 계약금액의 10%까지로 한다. 매도인의 어떠한 배상책임도 본 일반거래조건 제 6 조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중단된다.



(주)리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 번길 10, 우) 22013

- (4) 매도인은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 생산, 이익, 이자, 수입에 있어서의 손실, 정보 또는 자료의 손실 또는 간접적이고 결과적인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본 제 8 조에 규정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와 제외는 본 계약이나 불법행위 또는 무과실책임이론에 따른 책임 등 그 법적인 근거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 (6) 본 제 8 조는 매도인의 종업원, 하도급업자 및 라이선서(각 종업원을 포함함)에게도 적용된다.

9. 불가항력

- (1) 일방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할 경우 해당 당사자의 책임은 전부 면책하기로 한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일방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애사유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 노동분쟁, (준)전쟁, 폭동, 사보타지, 화재,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공장시설의 고장, 운송지연 또는 사고, 정부의 조치(가령, 법률 개정 및 수입허가의 철회) 등.
- (2) 하도급업자의 전항의 사유로 인한 물품공급 또는 서비스 지연도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
- (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함에 있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4) 본 일반거래조건 제 9 조 1 항의 어떤 사유가 물품 공급 내지는 서비스 제공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비용 또는 시간의 증가를 초래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보수, 작업 시간 기타 관련된 다른 조건들을 조정하기로 한다.

10. 소프트웨어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물품과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제품명세서에 표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서면 승낙 없는 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분해,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상대방에게 아래 사유 발생시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면 통지로서 즉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파산, 회생, 화의절차 개시 등 기타 도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 (3)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2. 당사자간 법률상의 관계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로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이다.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근로자, 법적 대표자, 대리인, 파트너 또는 합작관계에 있는 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의무도 부담 내지 창설할 수 없고,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매도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13. 면책 사항

매수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청구, 구상, 책임분담, 손실, 손해, 판결이나 화해(합리적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함)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상대방의 기밀 또는 상대방 소유의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거나 허용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밀이나 정보 (이하 총칭하여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비밀정보에는 본 계약의 조건들도 포함된다. 양당사자는 당해 비밀정보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중에 알려지는 경우나 법령이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누설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당해 비밀정보를 당사자 고유의 정보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취급해야 한다.

15. 수출통제규정준수

- (1)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한 상품(공급형태를 불문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및 문서), 또는 제공된 작업 및 용역 (모든 종류의 기술지원을 포함)을 제 3 자에게 이전할 경우, 그 매수인은 해당되는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재수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 작업 및 용역의 이전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독일, 유럽연합(EU), 미국의 수출/재수출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된 상품, 작업 및 용역을 제 3 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매수인은 특히 아래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확인 및 보증을 해야 한다.



㈜리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 번길 10, 우) 22013

- (a) 상품, 작업 및 용역 계약과 관련된 이전행위 또는 중개행위 혹은 이러한 상품, 작업 및 용역과 관련된 여타 경제적 자원제공행위가 유럽연합(EU), 미국 및/또는 국제연합(UN)이 부과한 엠바고(embargo)를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사업제한 및 이러한 엠바고(embargo)의 우회금지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b) 이러한 상품, 작업 및 용역은 무기, 핵기술 또는 핵무기와 관련된 사용을 의도하지 않으며, 필요한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용은 사용금지 대상이거나 승인대상이다.
- (c) 독립체, 개인 그리고 조직체와의 교역과 관련된 모든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해당 제재대상자 리스트 규정이 고려 되어져야 한다.
- (3) 관련기관 또는 매도인이 수출통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공급된 상품, 작업 및 용역의 특정 최종소비자, 특정 목적지 및 특정 사용목적에 관한 모든 정보와 더불어 현재하는 수출통제 규정 내역을 즉시 매도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 (4) 매수인은 매수인의 수출통제 규정 불이행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배상청구, 소송 절차, 소송, 벌금, 손실, 비용 그리고 손해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보상 하여야 한다.

16. 유보조항

국내외 무역 또는 통관 규정이나 금수조치 또는 기타 제재에 의해 매도인의 본 계약 이행이 방해 받는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17. 기타

-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른다. 본 계약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한다.
- (2)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법률이나 해당 관할법원에 의하여 무효 내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적법 유효하다. 양당사자는 무효 내지 위법한 조항을 대체하고 경제적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본 계약은 당사자간에 있어 유일하고 완전한 합의서이며 기존의 모든 계약 내지 합의에 우선한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와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확약, 기존의 거래방식, 그와 관련된 약속이나 조건, 거래관행 등에 구속 받지 아니한다.
- (4) 매도인의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는 본 계약상 매도인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한다. 최종적인 물품공급의 범위는 독일 수출규제에 따르는 물품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수출/재수출은 관련기관의 허가를 그 선결조건으로 한다.
- (5) 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6) 본 계약상 일방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의 위반에 대한 양해는 그러한 조항의 계속적 또는 향후의 계약위반에 대한 양해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계약조항 자체의 변경 또는 본 계약상 어떠한 권리의 변경으로도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포기나 양해행위도 그 포기나 양해를 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서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 (7) 본 계약은 양당사자 및 그 승계인과 양수인을 구속하며 그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본 계약은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하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영문본과 국문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문본이 영문본에 우선한다.